

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

2005. 7. 6 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칙(이하 “학칙”이라 한다)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(이하 “입학허가취소 등”이라 한다)에 관한 사유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사유) 입학허가취소 등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

1. 학칙 제14조 및 제15조에 규정된 입학자격 및 입학 전형별 모집요강의 지원자격에 미달한 경우
2. 입학 전형별 모집요강에 명시된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
3. 학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사정에 사용한 전형자료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
4. 입시부정,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위변조 등 입학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

제 3 조 (절차) ① 입학전형 관련자는 제2조에 규정된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학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입학처장은 입학허가취소 등의 사유가 보고된 경우에는 입학전형기획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입학허가취소 등의 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, 입학허가취소 등의 심의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입학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입학허가취소 등의 안건을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무회의에 상정한다.

제 4 조 (충원) 입학허가취소 등이 전형별 합격자가 발표된 이후에 결정된 경우에는 총장은 전형별 차점자 충원없이 해당 정원을 당해년도 다른 입학전형에서 충원하거나 차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.

제 5 조 (의견청취 등) ① 입학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입학허가취소 등의 처분 대상자나 대상자의 보호자 혹은 대리인(이하 “입학허가취소 등에 관한 의견청취대상자”라 한다)에게 전형관련 서류의 추가제출이나 사실 관계에 관한 입증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입학처장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입학허가취소 등에 관한 의견청취대상자에게 처분의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입학불허 및 납입금 등의 반환) ①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입학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향후 본교 입학에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재학생으로서 입학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자의 기 납부 입학금 및 납입금은 반환

입학전형의 합격취소 및 입학허가취소에 관한 규정

하지 아니한다.

부 칙(2005. 7. 6 제정)

①(시행일)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.